

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116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 20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- 주택법」(법률 제9046호 일부개정 2008.3.28)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향상시키고,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고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지원금액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내지 제8조)
- 마. 지원신청방법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바. 지원대상사업 결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- 사. 지원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아. 지원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 - 283호(2009.5.1~5.21)
 - 제출의견 : 없음.
- 나. 관련법령 및 근거
 - 주택법
- 다. 예산조치 : 필요시 확보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4. 본 문 : 덧붙임

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고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관내에서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보조금의 지원)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4조(지원대상)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
2. 진입도로,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
3.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
4.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
5. 태양광발전설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설치
6.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
7. 기타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

제5조(지원금액)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. 다만, 최대 지원금액은 3,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, 건축·토목 관계전문가

2. 군 소속 관련 실·과장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건축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의 적정성

2.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

3.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

4. 지원대상이 둘 이상으로서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

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시설물 노후상태(경과연수, 시급성 등)

2. 신청단지의 규모(세대수, 국민주택 비율, 주거면적의 규모 등)

3.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

제8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

「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수당,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보조금의 신청)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(단,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) 1부
2. 사업계획서 1부
3.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
4. 사업관련 도서(도면,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) 1부

제10조(대상사업 결정) 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.

1.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
2.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
3.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
4.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

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1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공사완료 내역서(증빙자료 첨부)
2. 사업 전·후 사진 각 1부

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,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.

제12조(지원결정의 취소)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

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
2.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,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3.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
5.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고성군 보조금관리 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				
신청자	공동주택명		동 수	
	주 소		세대수	
	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		준공일	
신 청 내 용				
구 분	개 요	소요예산(천원)	비 고	
계				
○○ 분야				
○○ 분야				
○○ 분야				
기 타				
<p>「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」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○○공동주택 관리주체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top: 20px;">고 성 군 수 귀하</p>				
<p>구비서류 : 1.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. 2. 사업계획서 1부. 3.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. 4. 사업관련도서(도면,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) 1부.</p>				

